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상시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하고, 발코니에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되 바닥난방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생활숙박시설 전용출입구 및 직통계단(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을 두지 아니하며 다른 용도와 동선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실 미만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삭제
4. 숙박업 관리자용 공간[직원사무실, 집단급식소, 휴게실(청소·경비노동자용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공용화장실 및 창고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상층 설치를 지향한다.
5. 삭제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피난 및 설비기준) 생활숙박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각 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 되도록 한다.

제4조(생활숙박시설의 관리)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권장하여 운영한다.

1. 숙박업 위탁업자의 위탁관리를 권장한다.
2. 분양자들의 권리보호와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하자보수 예치제도 적용을 권장한다.
3.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이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